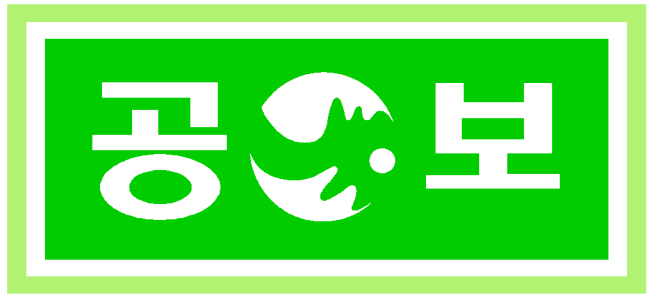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69 호 2017. 6. 1.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97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98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99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5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644호[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

안 내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9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집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집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7. 6. 1.	2017 -3	양산시 다방동 35*	강 석 진	울산 복구 산하동 367-13,14번지 지선	160	2017. 7. 1. ~ 2017. 9. 3..	수상레저사업 관리소 및 계류장 설치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 98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주립2길 6(무룡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시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6.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62-2외4필지(무룡동 463-2, 463-7, 464-1, 464-2)	울산광역시 북구 주림2길 6(무룡동)	2017-06-01	기존 지면대들의 주림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28 3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5길 22(호계동)	2017-06-01	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3-12-30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2-3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17-2(호계동)	2017-06-01	기존 자연 마을인 수동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명칭을 부여하였다.	2004-08-09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99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주립2길 6(무룡동)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 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6. 1.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림2길 6(무룡동)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462-2외 2필지 (무룡동463-2, 464-2)	2017-06-01	건축물 멸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17-2(호계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22-1	2017-06-01	건축물 멸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644호

2017.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결정·공시일 : 2017년 5월 31일
- 결정·공시 사항 : 토지 지번별 단위면적(m²)당 가격
- 결정·공시 필수 :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5,097필지
- 열람방법 : 북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및 區 홈페이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17년 5월 31일 ~ 6월 29일(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북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241-7593~75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 용	공시지가	의견가격
		원/m ² 원/m ²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2017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Enforcement Rules to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ttachment Form 8] You may also apply through the Government Civil Petition Portal(www.minwon.go.kr).

Appeal against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Receipt No.	Receipt Date.	Processing Period: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the appealing period expires
Appellant	Name	Date of Birth(Business License No.)
	Address	
	Phone	Mobile Phone
	E-mail	Relationship to the landowner
Subject Individual Lot	Address & Lot No.	
	Land Category	
	Actual Use	
Grounds for Appeal	Announced Price	Appellant's Opinion
	KRW/ m ²	KRW/ m ²
Reasons to Appeal		

Pursuant to Paragraph (1) in Article 11 of Act on Price Announcement of Real Estate, and Paragraph (1) in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Decree to the same Act, I file an appeal to the announced price of individual lot disclosed on the date of _____ as ab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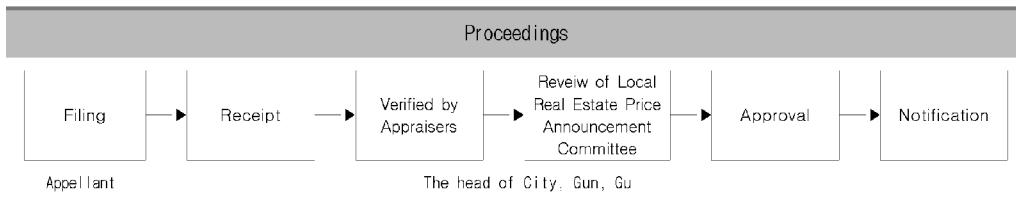
Date:

Appellant

(signature)

To: **ULSAN, Buk-Gu**

Attached	Documents related to the appeal(in case that documents are available)	Fee
		N/A



210mm×297mm(Woodfree Paper 80g/ m²)